

지급기간 및 주기

-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
※ 월할 계산하지 않음

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

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

지원대상

-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※ 지원 제외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지원요건

- 1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체혁신을 신청
-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
- 3 고용보험 가입
-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

* 다만,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②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④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

VIII. 참고사항 / 04. 신중년 적합직무 참조(85P)

지원수준 및 한도

- (지원수준)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

유형	회차별 지원액 (3개월 단위)	연간총액
우선지원대상기업	240만원	960만원
중견기업	120만원	480만원

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- (지원인원 한도)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%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), 단,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 버림,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) 이내로 지원

지급기간 및 주기

-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
※ 월할 계산하지 않음

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

지원대상

- 모든 사업주

※ 지원 제외 :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(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)

지원요건

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

※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

-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(p22 참고)
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기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, 성지역 거주자

● 구직등록은 고용센터(work-net)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장애인직업 재활실시설기관, 고령자인재은행,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

● 6개월 이상 고용유지

(1)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

-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

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연번 | 취업지원프로그램
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

이수한 사람의 범위

- (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「유형의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기관단위의 월평균 총수득이 기준 수득(이하 「기준 수득」)의 100%의 60%를 초과하는 사람 및 「유형의 청년유형제외」로서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증료된 자, 단, 취업 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청약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」)

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
(고용노동부)

- (2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「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「유형의 청년유형 제외」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된 업종에 속하는 7개업에서 토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증료된 자로 둘, 단, 취업 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청약자의 경우에도 단계를 마치고 2년내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2개월 이상인 사람」)

연번 | 취업지원프로그램
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

이수한 사람의 범위

2	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」(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)	-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」을 마친 사람. - 단,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2개월 이상인 사람
3	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「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」(고용노동부)	-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. - 다만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2개월 이상인 사람
4	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(여성가족부)	-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(여성가족부)를 마친 사람
5	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「해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 및 「직업교육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」(법무부)	- 「해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. -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2개월 이상인 사람
6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 훈련)」(고용노동부)	- 「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」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7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」(고용노동부)	- 「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 훈련)」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8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장애인 취업성공파키지」(고용노동부)	- 「장애인 취업성공파키지」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. -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9	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「자활근로」(보건복지부)	-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「자활 근로」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10	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「기본교육」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「취업워크숍」 및 세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」(국방부, 국가보훈처)	-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,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- 직업교육훈련(사회적응교육, 직업교육훈련,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)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미친 사람
11	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「취업지원프로그램(제도학 프로그램)」을 미친 사람 중 「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)의 100분의 50이하 기구 구성원」이하인 사람.	- 다만, 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미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12	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	-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미친 사람
13	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「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회원과정」(고용노동부)	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「일반고 특회원 과정」을 미친 사람
14	고용위기지역 이직자 (고용노동부)	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자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미친 사람
15	특별고용지원법종 이직자 (고용노동부)	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자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미친 사람
16	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(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)	- 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(1)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「NH 소명터 프로그램」 및 '비스운전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' (2)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「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」(자동차부품 공장지동회제어 인력양성, 자동차부품 품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) 및 '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'
17	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(고용노동부)	- 「구직난관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맞춤형(2~3개월) 프로그램 제공
18	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(법무부)	-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운영하는 「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」의 취업프로그램을 미친 아프간 특별기여자

(2)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

-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(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)

구 분	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
중증장애인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
여성실업자	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(지역)대상자

지원수준 및 한도

-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~60만원 지원

유 형	회차별 지원액 (6개월 단위)	연간총액
우선지원대상기업	360만원	720만원
대규모기업	180만원	360만원

- 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- (지원한도)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)

지급기간 및 주기

-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

※ 월할 계산하지 않음

- * 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

*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시설이 유효

4. 지원 제외근로자

-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
* 다만,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

- 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
-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
*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·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체용할 경우는 지원

-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자주

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-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- ⑦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

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1.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

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

* 다만,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② 휴지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등

*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

- ① 국민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② 중증장애인 ③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

아래 유형 해당자

④ 기초생활수급자 ⑤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신용회복지원자

⑧ 결혼이민자 ⑨ 위기청소년 ⑩ 여성가장 ⑪ 건설일용직 ⑫ 장애인 ⑬ 니트(NET)족

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
⑮ 직업능력개발훈련(성규훈련, 맞춤훈련) ⑯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
⑰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
⑱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학교를 이수한 사람

⑲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

⑳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
*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

2.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

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

* 다만,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②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④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

5 지원제외 사업주

*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

-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②중 중장애인 ③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④국민취업지원제도(1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2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
 - ⑤ 기초생활수급자 ⑥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신용회복지원자
 - ⑨ 결혼이민자 ⑩ 위기청소년 ⑪ 여성가장 ⑫ 건설일용직 ⑬ 장애인 ⑭ 나트(NEET)족
 - ⑮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유태한 다음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- ⑯ 직업능력개방훈련센터(성균관, 맞춤훈련) 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 - ⑱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- ⑲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
 - ⑳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
 - ㉑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 - ㉒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
* 기준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
- ② 최저임금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 - * 다만,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
- ③ 사업주의 배우자, 칙계 존비속, 4촌 이내 혈족인척
- 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
- ⑤ 비상근 측탁근로자

1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
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국회, 공직유관단체 등 「부폐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
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*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*
- ③ 일반유홍·무도유홍·기타주점업, 갭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적 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

- ① ~ ⑤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와 동일
- ⑥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체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
- ⑦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
감원방지 의무

6

3 고용촉진장려금

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)을 새로 고용한 경우

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까지(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,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

* 다만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
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하고, 정년, 계약기간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
※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